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2622 |
|------|------|

2025. 4. 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김규남 의원 외 20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4.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규남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있음.

- 특히 장애예술인은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가 한정되어 늘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관료 납부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 순위에 우선권을 주고, 대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하게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내외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무대를 확보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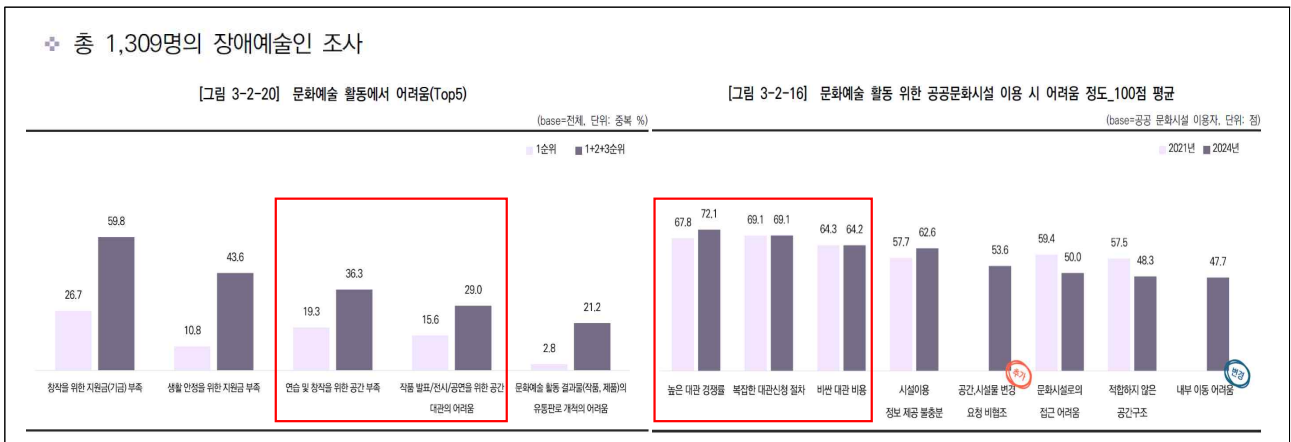
- 현행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017년 제정되었으며, 2020년 제정·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¹⁾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경비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1)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실시 주기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61.2%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서 ‘연습 및 창작을 위한 공간 부족’, ‘작품 발표/전시/공연을 위한 공간 대관에 어려움’ 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음.

또한,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공문화시설 이용에서 ‘높은 대관 경쟁률’, ‘복잡한 대관 신청 절차’, ‘비싼 대관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예술인에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의 확대와 비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제안한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우선 대관 및 대관료 감면 규정은 여전히 부족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무대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대상 우선 대관 및 대관료 감면(안 제9조)

- 동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하게 하고, 대관료를 50% 이내

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 현행 조례 제9조는 상위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에게 문화예술 기회와 활동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서, 동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의 확대 측면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항 비교 >

| | |
|---------------------------------|--|
|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특히, 공공시설의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은 「지방자치법」 156조²⁾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 장애 예술인 대상 서울시 문화시설 대관료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공익상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실제로 2024년 예술활동증명 등록 인원 기준으로 장애예술인은 전체 예술인 대비 약 1.8%³⁾에 해당하지만 지난 3년간 장애예술인

2)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2024년 9월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활동 증명 시스템(예술활동증명) 등록 장애인 3,013명과 2024년 10월 기준 전체 예술활동증명 유효인원 163,987명을 비교하여 산출

개인 혹은 단체의 시립 문화시설 대관 신청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관료 할인 등의 지원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볼 수 있음.

- 현재 장애예술인이 대관할 경우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시립 문화시설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평화문화진지, 문래예술공장의 3곳이며, 별도의 규정 없이 자체 방침으로 장애인등록증, 활동 이력 등을 증빙하는 것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립 외 다른 공공문화시설 사례를 보면, 장애예술인 대관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문화시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모두예술극장, 경기도 부천시 소재 공연예술연습공간 등이 있으며, 단체원들의 장애인등록증 등의 증빙을 통해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대상 우대 제공 문화시설 >

| 시설명 | 운영기관 | 대상 | 우대사항 | 증빙 |
|------------|----------------|--|--|------------------------|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 서울문화재단 | 장애인 | - 노들갤러리1,2관 대관료 50% 감면 | 장애인등록증, 활동 이력 등 |
| 평화문화진지 | 도봉문화재단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자) | - 대관료 50% 감면 | 장애인등록증 등 |
| 문래예술공장 | 서울문화재단 | 장애예술가 | - 우선 대관 | 장애예술인 단체 대표자의 증명서 등 |
| 모두예술극장 |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⁴⁾ | - 우선 대관 - 대관료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
| 공연예술연습공간 | 부천문화재단 | 장애예술인 단체 | - 단체원 전원 해당: 대관료 50% 할인 - 단체원 일부 해당: 대관료 3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4) 장애예술의 가치 확산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단체 중 다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단체로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거나 공연 및 행사 참여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단체

-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 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재료비, 대관료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직접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발표 무대를 확장하기 위한 공간적 지원은 없었음.
-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대관에 우선권을 두는 것은 타 대관 신청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 문화시설 대관은 한정된 자원을 여러 예술단체가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 다른 예술단체 입장에서 경쟁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 또한, 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가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우선 대관을 받기 위하여 일부 단체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규정과 사전 대관 심의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제시한 ‘대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 규정은 실제 운영 사례에서도 50% 내에서 감면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한다’의 규정은 대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임.

< 수정 의견 >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의 건 |
|--|--|---|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생략)</p> <p><u><신 설></u></p>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하게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u></p>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u></p>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할 경우 타 대관신청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지키고자 대관료 감면 규정은 유지하고, 우선 순위 부여 규정을 대관심의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수정주요내용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9조제2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2622 |
|----------|------------|

제안년월일 : 2025. 4. 28.

발 의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할 경우 타 대관신청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지키고자 대관료 감면 규정은 유지하고, 우선 순위 부여 규정을 대관심의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수정주요내용

- 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생략)</p> <p><u><신 설></u></p>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그 순위를 우선하게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 할 수 있다.</u></p>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u>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생략)</p> <p><u><신설></u></p> | <p>제9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u></p> |